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18 발의연월일: 2024. 11. 20.

발 의 자:정희용·김선교·박덕흠

서천호 • 윤영석 • 김상훈

김태호 • 박충권 • 백종헌

이달희 · 강대식 · 최은석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때에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와 관련하여 장애를 공연히 비하·모욕하거나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무작위로 공표되는 경우가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 등과 관련하여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에 "장애"를 포함함(안 제110조제2항 등).
-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다는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계자에 대하여 증명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110조 제4항 신설).
- 다. 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된 때는 일반 허위사실 공표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250조제2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2항 중 "성별을"을 "성별이나 장애를"로 한다.

제110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문에 규정된 행위가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인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제5항제10호의2 중 "성별을"을 "성별이나 장애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	②		
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			
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u>성별을</u> 공연히 비	<u>성</u> 별이나 장애를-		
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 ③ (생 략)	이의제기) ① ~ ③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④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		
	로 해당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		
	자의 장애에 관하여 허위의 사		
	실이 공표되었음을 이유로 제1		
	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때		
	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		
	는 이의제기가 있은 날부터 3		
	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생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
로 演説・放送・新聞・通信・
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에게 불리하도
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公表하
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
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7
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단서 신설>

- ③ ④ (생 략)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1. ~ 10. (생 략)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

<u>다만, 본문에 규정된</u>
행위가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인 때에는 10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세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